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88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 권칠승·이기헌·김준형

임호선 · 위성락 · 김남근

송옥주·강유정·문금주

임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 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 급에 관한 청구권(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)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 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재산 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(헌법재판소 2024. 6. 27. 선고, 2021헌마1588 결정)을 하였음.

이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상속회 복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단서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상속제도의 안정 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 하고자 함(안 제999조).

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9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 면 소멸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999條(相續回復請求權) ① (생	第999條(相續回復請求權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第1項의 相續回復請求權은	2
그 침해를 안 날부터 3年, 相	
續權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	
터 10년을 경과하면 消滅된다.	
<단서 신설>	<u>다만,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</u>
	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
	<u> 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</u>
	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
	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.